

NEWS LETTER

2024-09-19

Legal Issue

- 영업비밀 사용 추정규정 신설해서 영업비밀 침해 억제해야
-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MINWHO News

- 웹사이트 홈페이지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받아 수천만원 손해배상 인용 승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Legal Issue

영업비밀 사용 추정규정 신설해서 영업비밀 침해 억제해야

김경환 대표변호사

기술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피해 기업들이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임에도 과도한 입증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크게 취득, 사용, 누설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영업비밀의 취득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누설은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영업비밀 침해 3가지의 유형 중에서 핵심은 사용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 행위나 누설 행위와 달리 사용 행위는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크고, 법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영업비밀의 사용 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 사용 행위의 비가시성이다. 취득이나 누설 행위는 물리적 증거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입증될 수 있지만, 사용 행위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영업비밀이 사용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사용 행위가 가해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쟁사에서 도입된 신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결과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그 기술이나 제품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기초로 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은 제품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고도의 기술적 분석과 상당한 시간, 비용이 소요되며, 때로는 경쟁사의 협조 없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사용 추정 규정을 신설했다. 2023년 개정 일본 영업비밀보호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업비밀 취득 사실을 입증하면, 가해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즉, 가해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법적 분쟁에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정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용 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영업비밀 보호나 피해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 추정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용 추정 규정이 도입된다면, 반대로 가해자가 자신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바, 이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로 인해서 기업 환경은 보다 안전하게 바뀌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을 중심으로 -

원준성 대표변호사

일반적으로 접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누설의 사고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문자 형식으로 저장된 개인정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자가 수집과 이용의 측면에서 가장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문자형식의 파일로 관리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할 뿐 정보의 형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제공행위에 관하여도 특별한 유형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자 형식의 파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고자 한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피고인 X는 한 장례식장에서 A가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Y에게 전일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Y는 위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촬영된 A의 모습 등 영상자료를 재생하여 피고인 X가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X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쟁점이 된 행위는 Y가 보여준 CCTV 영상을 X가 '시청한 행위'가 (구)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원심은 X가 CCTV 영상을 시청하여 개인정보를 지득한 행위를 위 (구)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제공받은'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던 제1심을 파기하고 X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 8. 23.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시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즉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반드시 그 영상 파일을 전달 받아야만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시청하여 개인정보를 지득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위 판시의 취지는 비단 영상 형태의 정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통화녹음 등 음성 형태의 정보의 경우 이를 청취하여 개인정보를 지득할 수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행위 역시 제공받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매체가 기록된 파일 자체의 관리는 물론, 그 파일의 재생이나 실행도 함께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원준성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3
wonjs@minwho.kr

MINWHO NEWS

웹사이트 홈페이지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받아 수천만원 손해배상 인용 승소

웹사이트 홈페이지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받아 수천만원 손해배상 인용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받아 수천만원 손해배상 인용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원고의 홈페이지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의 구성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시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의 상품상세정보 페이지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입증하였고, 이와 동일 유사한 페이지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중단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저작물 사용을 금지하였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MINWHO New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고 메타(구 페이스북)가 페이스북 회원인 이용자들이 다른 앱(제3자 앱)에 페이스북 로그인(소셜 로그인 기능)으로 회원가입 할 때 그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친구인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이용자친구들의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구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및 약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시정명령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 과정은 이용자가 주도한 것이며, 원고는 정보 이전의 주체가 아닌 기술적 수단만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는 페이스북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 앱에 이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시정명령등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을 통해 원고가 정보 이전의 주체라는 점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으며,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 역시 구 과징금 부과기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사실 등을 재차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Mi 법무법인 민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11층 / 2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